



# 미국 FDA, 세포 · 유전자치료제 심사인력 100명 확충한다.

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

## ◇ 미국 FDA, 세포 · 유전자치료제 심사인력 100명 확충 계획

- 미국 FDA 바이오의약품평가연구센터(CBER) 내에서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 및 첨단치료제과(Office of Tissues and Advanced Therapies) Wilson Bryan 과장은 9월 26일 개최된 미국 세포유전자학회 정책회담에서 현재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관련 3,000개 이상의 임상시험계획(IND)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힘.
- 그는 지난 5년~10년 동안 IND 신청 건수와 상담 업무량이 FDA 심사자 및 프로젝트 관리자 증가를 훨씬 초과하는 속도로 증가했으며, 현재 조직 및 첨단치료제과에는 300 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제7차 전문의약품 이용자부담금법(PDUFA VII)이 재승인이 되면 향후 4~5년에 걸쳐 약 100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될 예정이라고 밝힘.
- 전문의약품 이용자부담금법(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)는 기업들이 FDA에 전문 의약품의 시판 허가 등을 위해 내야 하는 심사수수료에 관한 법<sup>❶</sup>으로 1992년 제정 이후 5년마다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으며, 금년 10월부터 7번째 법의 적용을 받게 됨. 제네릭의약품<sup>❷</sup>, 바이오시밀러<sup>❸</sup>, 의료기기<sup>❹</sup>의 경우도 별도 이용자부담금법에 적용을 받고 있음.

※ ❶~❹는 아래 붙임 자료 참고

## ◇ 미국 FDA, 세포 · 유전자치료제 업무 처리 현황

- 한편, FDA 조직 및 첨단치료제 과장은 지난 5월 19일 개최된 미국 세포유전자학회에서 늘어나는 업무량을 해결하기 위해 가이던스, 워크숍, 웨비나 등을 통한 그룹 커뮤니케이션(group communication)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.
- 조직 및 첨단치료제과에 제출된 신규 IND 건수는 2016년 163건에 불과했으나, 2020년 350건으로 급증했으며, 2021년에도 299건에 달했고 2022년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- 또한, FDA에서 운영하고 있는 혁신치료제(BreakThrough) 및 재생의료첨단치료제(RMAT) 지정 제도를 통한 신청도 늘고 있는데 이렇게 지정된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를 우선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IND 신청에 대한 검토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밝힘.

## ◇ 국내 의약품,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식약처 심사인력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증원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음. 특히, 세포 · 유전자치료제, 마이크로바이옴 등과 같은 새로운 치료제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문심사자를 채용해 신속히 심사하고, 업계와 소통하고, 필요한 경우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제 · 개정하는 등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임.

〈붙임〉 미국 FDA, 2022년 회계연도 이용자부담금(User Fee)

구 분		2021년	2022년	비고(증감)
전문의약품① (PDUFA)	전문의약품 (임상자료 포함)	\$2,875,842	\$3,117,218	\$241,376
	전문의약품 (임상자료 불포함)	\$1,437,921	\$1,558,609	\$120,688
제네릭의약품② (GDUFA)	제네릭 (ANDA)	\$196,868	\$225,712	\$28,844
	원료의약품등록 (DMF)	\$69,921	\$74,952	\$5,031
바이오시밀러③ (BsUFA)	바이오시밀러 (임상자료 포함)	\$1,746,745	\$1,746,745	동결
	바이오시밀러 (임상자료 불포함)	\$873,373	\$873,373	동결
	초기 BPD*	\$102,494	\$57,184	-\$45,310
	연간 BPD*	\$102,494	\$57,184	-\$45,310
의료기기④ (MDUFA)	사전 허가 (PMA)	\$365,657	\$374,858	\$9,201
	사전 신고 (510(k))	\$12,432	\$12,745	\$313

① 전문의약품의 경우 전문의약품 이용자부담금법(PDUFA: 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)에 따라 정해지며, 임상시험 자료 검토 필요 여부에 따라 비용 2배 차이(필요한 경우 필요없는 경우보다 2배 높음)

② 제네릭의약품의 경우 제네릭의약품 이용자부담금개정법(GDUFA: Generic Drug User Fee Amendments)에 따라 정해지며, 원료의약품 또는 완제의약품 시설이나 해외나 국내 소재 여부에 따라 비용 차이

③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바이오시밀러 이용자부담금개정법(BsUFA: Biosimilar User Fee Amendments)에 따라 정해지며, 전문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임상자료 심사 필요 여부에 따라 비용 2배 차이

\* Biological product development(BPD)는 바이오시밀러의 개발 및 승인을 신속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미국 FDA 심사관과 기업과의 공식적인 미팅 프로그램으로 초기(Initial BPD)와 연간(Annual BPD)으로 구분

④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이용자부담금개정법(MDUFA: Medical Device User Fee Amendments)에 따라 정해지며, 사전허가나 사전신고가 필요한 경우나 신기술(De novo) 의료기기 등에 따라 비용 차이

〈참고자료〉

- Overworked and ready for expansion: FDA's cell and gene therapy office preps to add about 100 new positions, Endpoints News, 2022.9.26
- FDA explains plans to bolster cell and gene therapy approvals through wider messaging, RAPS, 2022.5.19.
- 미국 FDA, 2022년 회계연도 심사수수료 확정, 한국바이오협회, 2021.8.17